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. 2. 15 선고 2021가단62735 판결 [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은경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2. 2. 8.

판 결 선 고 2022. 2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2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2020. 7. 14.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목조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: 140,000,000원(평단가 3,500,000원, 면적 40평, 부가가치세 포함, 이하 생략)의 공사계약(이하 '이 사건 공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4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평단가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,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14,000,000원의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,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,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14,000,000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서 추가 설계비용 6,600,000원, 인허가 비용 12,000,000원, 합계 18,600,000원(= 6,600,000원 + 12,000,000원)의 지급을 구한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평단가 3,500,000원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140,000,000원으로 정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.

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,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추후 변동의 여지없이 140,000,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갑 제1, 6,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상세한 설계도면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,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도면 작성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대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였던 사실,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2 내지 14조에 설계변경, 물가변동, 기타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기도 한 사실 등 반대사정이 인정될 뿐이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지상